

「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(요약)

개정조항	개정항목	개정내용
제2조 (다수인 보호시설)	아동복지시설(제1호)	<u>공동생활가정</u> 추가
	장애인복지시설(제2호)	장애인생활시설 → 장애인거주시설 (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)
	<중전>부랑인복지시설(제4호)	<u>노숙인복지시설</u> 로 개편 → 「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적 시설
	노인복지시설(제5호)	<u>노인공동생활가정(가목)</u> , <u>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나목)</u> 포함 ※ <u>실비시설</u> 은 삭제
	<중전>요보호자를 위한 복지 시설(제6호)	<u>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</u> 로 개편 →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적 시설
	<u>한부모가족복지시설(제8호)</u> [신설]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용적 시설
제19조 (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)	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(제2항 제3호)	시·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에 포함
제23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	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[신설]	조사·구제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개인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가능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)